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10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준병 · 이정문 · 박용갑
박민규 · 이성윤 · 임미애
서영석 · 이춘석 · 양부남
박희승 · 안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군

· 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3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기업 및 대학의”를 “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5호 중 “제23조에”를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
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
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
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
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
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
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
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등) <삭
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

<p>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p> <p>1. ~ 4. (생략)</p> <p>5. <u>제23조에</u> 따른 기회발전특구 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6. ~ 15. (생략)</p>	<p>제63조(기능)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u>」에----- ----- -----</p> <p>6. ~ 15. (현행과 같음)</p>
--	---